

제4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4:00~17:00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

사회 : 김누리 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시 간	내 용	
14:00~14:20	개회사	이제훈 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축 사	박성연 소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환영사	김연순 사무총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0~14:50	기조강연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 박태규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4:50~15:50	주제발표1	공익위원회와 정부 규제안의 검토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2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과 대응 변영선 센터장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15:50~16:10	TEA TIME	
16:10~16:40	종합토론	좌 장 : 문형구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토론1 : 김재춘 대표 (가치혼합경영연구소)
		토론2 : 조근희 비서관 (원혜영 국회의원실)
토론3 : 배원기 교수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16:40~17:00	질의응답	



나눔지식 네트워크란?

‘나눔지식 네트워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나눔지식을 교류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조직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기관의 연구 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나눔지식의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Content

□ 인사말	1
□ 기조강연	3
□ 주제발표1	15
□ 주제발표2	27
□ 토론1	49
□ 토론2	55
□ 토론3	59
□ 공동주최기관 소개	65



인 사 말



투명성과 신뢰는 비영리조직의 기본 가치이자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나라의 비영리부문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인 질문과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익위원회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비영리조직의 또 다른 핵심가치인 자율성과 독립성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듯 보입니다.

나눔지식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해 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올해 공동기획포럼 주제를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로 선정하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토론함으로써 비영리조직과 생태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기초강연을 맡아주신 연세대 박태규 명예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김진우 교수님과 변영선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예 종 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 훈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 종 문

기초강연



박태규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모금단체를 중심으로

나눔지식 네트워크

2018. 6. 21

박태규

비영리 조직의 역할

- 비영리조직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서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왔음
- 비영리조직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정치·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기인함
-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고, 글로벌경제화가 가져온 사회적 위기와 시장의 불안정성은 제3섹터라는 대안에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 이 영역의 발전된 역할이 필요함

- 비영리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사회적 부분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산과 고용(자원봉사를 포함해서) 등 경제적 역할도 비중 있게 수행하고 있음
- 비영리조직은 시민성 및 사회자본 창출, 삶의 방식 변화 등 새로운 기능을 형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 그러나 비영리 조직의 이런 역할을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을 다 할 수 있어야 함

비영리 조직의 특성

- 비영리조직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정부와는 달리 빨리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비영리조직은 시장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시장의 밖에서 사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음
- 정부, 기업, 그리고 여러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단체들과 협력관계(partnership)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를 접근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함

비영리 조직의 실패

- 정부실패, 시장의 실패와 더불어 비영리 조직도 실패할 수 있음
- '정부의 실패-정치적 책임', '기업의 실패-시장퇴출'이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비영리 조직의 실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성도 희박함
- 따라서 비영리 조직은 '시장의 평가에서 자유롭다'는 특성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NPO의 실패요인과 성공 조건

NPO 실패 이론 (Lester A. Salamon)

- (i) 자원: 불충분성(insufficiency)
- (ii) 대상: 특정주의(particularism)
- (iii) 산출물: 온정주의(paternalism)
- (iv) 경영: 비전문성(amateurism)

NPO의 성공 조건:

- (i)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신뢰도 확보
- (ii) 투명성을 통한 자원조달 능력 제고
- (iii) 투명성을 통한 생산성(성과) 향상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이란?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이란 이해당사자 그리고 사회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Charity Navigator)

- 진정한 의미의 투명성은 단순히 자료와 숫자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영리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되고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불필요하고 관련성 없는 정보의 제공은 오히려 비영리 조직의 활동,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투명성은 비영리 조직의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비영리 조직의 활동과 관련해 솔직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임

비영리 조직 투명성의 요건:

- (i) 비영리 조직과 관련한 편향되지 않은 정보 제공
- (ii) 비영리 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 (iii) 관련 자료를 쉽게 찾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국내의 비영리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

-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정부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등)

-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높이려는 법제도 도입의 효과
 - 비영리조직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개선
 - 비영리조직이 투명성을 개선을 통해 기부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음
 -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과 법적 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

- (i) 47% NPO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
- (ii) 65%의 언론인이 NPO의 투명성에 대한 취재필요성
- (iii) 71%의 여론이 NPO의 규제강화 찬성
(영국, CharityComms, 2015)

-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환경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경향
- 법적 환경과 더불어 비영리 조직을 감시하는 민간의 감시기구의 역할도 나타나고 있음
-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적, 감시기구 등의 외부적(법적)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한계가 있음

- 우리사회에서도 정부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의존성, 종속성 그리고 폐쇄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소수의 비영리조직이 사적 영리를 추구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공공성 결여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언론의 보도에 따른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침)

- 투명성관련 외부적(법적) 환경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조직의 신뢰도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적, 감시기구 등의 외부적(법적)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한계가 있음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과제

-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중요한 조건으로 '자율성'과 '공공성', '책임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비영리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으로 사회적 평가가 이뤄짐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필수적 요인으로 '투명성'을 들 수 있음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과제

-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중요한 조건으로 '자율성'과 '공공성', '책임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비영리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으로 사회적 평가가 이뤄짐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필수적 요인으로 '투명성'을 들 수 있음

비영리 조직 투명성의 범위

- 1) 재무적 투명성
 - 법적, 제도적 이행사항
- 2) 사업성과와 성과평가에 대한 투명성
 - 달성하려는 사업의 성과결과
- 3)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과정
- 4) 미션(mission)에 대한 투명성
 -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

비영리 조직 투명성의 대상

- 1) 정책당국에 대한 투명성
 - 재무적 투명성을 중심으로
- 2) 비영리 조직의 수혜자에 대한 투명성
 - 수혜자의 의사반영
- 3) 사회일반에 대한 투명성
 - 사회일반의 비영리 조직의 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
- 4) (구성원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 자신에 대한 투명성
 -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된 구성원, 기부자 포함

투명성 향상을 위한 도전 과제

-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저항하는 성안에 갇힌 조직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 조직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외부적, 법적인 투명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조직이어야 함
- 비영리 조직 스스로 투명성에 관한 문화와 환경의 조성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함

투명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

- 비영리 조직의 의무적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 사업 및 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보장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조직의 내부적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려는 노력
- 비영리 조직들의 투명성을 달성하려는 공통적 노력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영리 조직들의 자발적인 참가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투명성의 기준을 높여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주제발표 1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및 과제

현행 국가 감독 체계의 문제점

- 1. 규제 위주의 감독 체계
- 2. 정치적 비중립성
- 3. 전문성과 통일성 결여
- 4. 관할의 문제
- 5. 국가의 감독 및 지원은 법인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규제 위주의 감독 체계

- 성악설적 법인관: 억제 대상으로서의 민간공익단체
- 법인설립에 관한 허가주의 및 기부재산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
- 영국법/호주법은 민간공익활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장려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

정치적 비중립성

-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감독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허가 여부 자체나 설립허가까지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법인 설립허가의 지연 또는 불허가) cf.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
- 감독청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공익단체가 "행정의 연장된 팔" 내지 "관변단체"로 변질될 수 있음

관할 및 이중규제의 문제

- 주무관청이 분명치 아니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나 성질상 특정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나 감독에 친하지 아니한 사업 등에서 행정청 사이에 핑퐁게임 발생(cf. **설립인가에 관한 주무관청제로 인하여 미해결**)
- 이 경우 민간공익단체는 법인격의 취득이나 공익성을 인정받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됨
- 성질을 달리하는 복수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목적 사업별로 복수의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cf. **주무관청제로 인하여 미해결**)
- 설립이나 등록, 세제혜택단체 지정, 기부금품의 모집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중복된 보고의무/서류제출로 비효율 야기(cf. **일부만 해결, 검토 필요**)

국가의 감독 및 지원은 법인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 현재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민법에서는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즉,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 감독 여부가 달라짐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共益)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에 대하여 혈세를 들여 감독할 필요가 있는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익성을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거나 공적 자금을 지원받거나, 사회 일반으로부터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받는다면, 민간공익부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도 국가 감독이 따라야 함
- Cf.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법상의 법인에 한하여 규율할 것인지? 일단 소규모로 출범하고 나중에 흡수시키는 전략?

공익위원회의 역할

- 1. 민간공익활동의 육성/지원 강화
- 2.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및 유지
- 3. 총괄기구로서의 공익위원회
- 4. 공익성을 기준으로 한 지원 및 감독

민간공익활동의 육성/지원 강화(I)

- 공익위원회는 민간공익활동의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정관변경, 다른 공익단체와의 합병, 재산관리 영역에서의 수익제고방안 등에 관한 자문기능,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육성/지원기구
- 공익단체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공익단체가 원할 경우 공익위원회가 법령, 회계, 재무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교육 및 자문
-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에 대한 비싼 법률자문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된 자본 및 시간은 본래적 공익목적의 실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잠재적 설립자 또는 기부자의 신뢰를 높여 더 많은 민간공익단체의 설립 또는 더 많은 기부를 유인할 수 있게 함
-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할 수 방안의 제시

민간공익활동의 육성/지원 강화(II)

- 공익위원회는 법령/정책과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함
- 공익위원회는 사회 일반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해야 함
- 기부재산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의 비율에 관한 제약을 전면적으로 철폐함(시장의 원리에 맡김)
- 각종 세금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민간공익단체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을 최소화 함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및 유지

- 공익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
- 공익위원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하지만 「비행정부기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함
- 공익단체의 대표자 회의가 "공익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배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방식

총괄기구로서의 민간공익위원회

- 신설될 민간공익단체등록부를 통한
-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이나 재무정보를 민간공익단체등록부에 공시하고 관심 있는 자는 누구라도 공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투명성)
- 법해석과 법적용의 통일성

공익위원회의 주요 기능 내지 업무

- 공익성의 인정 및 취소
- 민간공익단체의 적정 운영을 위한 육성 및 지원
-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모집에 대한 허가 또는 모집활동의 계속 여부의 판단
- 공익위원회의 활동 또는 목표의 실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전달(특히 민간공익단체의 등록부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공익위원회의 과제

- 1.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
- 2. 민간공익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경계 획정
- 3. 적법성 통제 vs. 합목적성 통제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

- 총괄적 육성/지원 및 감독기구로서의 공익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
- 제도적으로 이를 어떻게 최적의 상태로 구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민간공익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경계획정

- 민간공익단체의 정치적 의견표명 내지 정치활동 참여가 공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 정치적 의견표명이 자기목적이 아니라 정관상의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허용된다고 할 것
-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의 정치적 의견표명 또는 활동이 허용될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민간공익위원회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적법성 통제 vs. 합목적성 통제

- 영국과 호주에서는 공익위원회가 법령의 위반과 같은 위법행위 (misconduct)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넘어 부실운영 (mismanagement)의 경우에도 민간공익단체에 간섭할 수 있는 「합목적성 통제」까지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감독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는 공익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합목적성 통제가 아닌 적법성 통제에 그쳐야 함
- 입법 과정에서는 적법성 통제와 합목적성 통제를 세밀히 구분하는 작업 필요

기대효과(I)

- 하나의 공익법인으로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익법인 내부의 관리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됨(cf.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제로 인하여 기대할 수 없음**)
- 공익위원회의 창설은 “설립-공익성인정-사후관리”의 3단계 과정 모두에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 제도 개선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짐(cf.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제로 인하여 기대할 수 없음**)
-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설립 통제 및 사후 관리를 통합 수행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cf.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제로 인하여 기대할 수 없음**)

기대효과(II)

-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어 기부 확대에 조력
- 민간공익부문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
- 공익자원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주제발표2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www.samil.com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과 대응

2018.06.21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pwc **SAMIL** | 삼일회계법인

Agenda

1.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소개
2.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3.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소개

1

1. 회계란?

회계와 회계기준

2. 비영리법인별 회계기준

종류	회계규정	회계원칙 및 방법	구분회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상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발생주의 - 복식부기방식	-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 - 통합결산서 작성 - 기금결산서는 별도 작성
학교법인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복식부기 (단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 가능)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구분
의료법인	- 의료기관 회계기준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발생주의, 복식부기	-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2 이상의 병원은 각 병원마다 구분)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단식부기.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 법인회계 - 시설회계 - 수익사업회계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원칙을 적용, 재무제표규칙을 준용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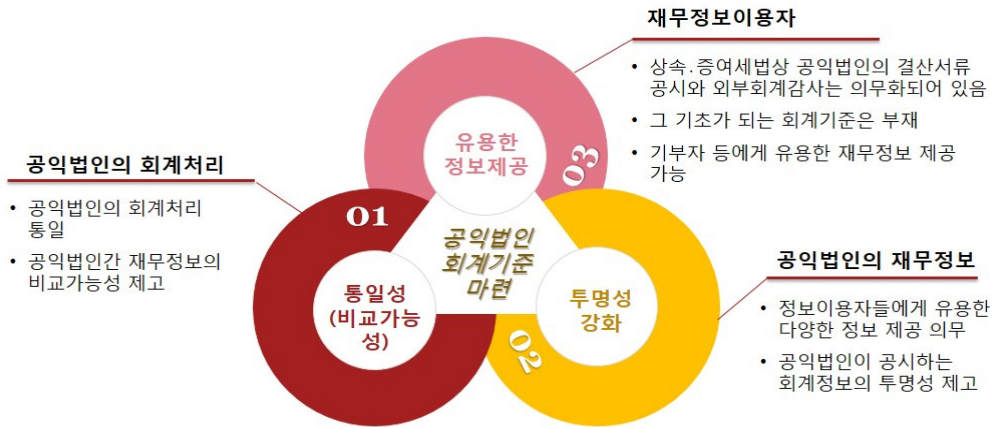
- 2017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발표 (임의규정)
-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발표 (강제규정)

Samil PwC

5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배경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될 회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 등 공익법인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삼일 PwC

6

4.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2017년 12월 고시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2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외)

- 다음의 공익법인은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4, 시행규칙 제14조의 4)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②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종교법인은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43조의 3 제1항 제2호)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계속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적용제외(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제외)

- ①복식부기와 ②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다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기준 제6조 제2항)

□ 공익법인 유형별 적용대상 판단

유형	설립근거법	회계기준	비고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	복식부기(유치원, 초·중 등은 단식)
의료법인	의료법 등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	복식부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특별법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복식부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단식부기 (복식부기 선택)
학술·장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없음(기업회계 원칙 제시)	-
예술문화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없음	-
기타	민법, 기타특별법 등	없음	-

2.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시기

□ 최종 고시 : 2017.12월 고시

□ 시행일

-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 부칙 제1조).
-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기준 부칙 제2조).
- 다만, 공익법인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기준 부칙 제4조).

□ 적용 유예

부칙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 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교재무제표 작성

-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기준 부칙 제3조).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요내용

3

1. 기준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재무상태표
- 제3장 운영성과표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 제5장 주식
- 부칙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기준 제6조 제1항)

2. 제1장 총칙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되는 기준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적용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 지부, 시설, 지사, 센터 등 동일 법인격 내의 보고실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칙

2. 제1장 총칙,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p> <p>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표는 제외 ❖ 순자산변동 내역 주석 공시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p> <p>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p> <p>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순서 1순위: 다른 법령(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규정) 2순위: 공익법인회계기준 3순위: 일반기업회계기준
<p>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p> <p>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p> <p>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정책의 변경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 ❖ 회계추정의 변경 -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

Samil PwC

15

2. 제1장 총칙,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p> <p>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p> <p>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p> <p>⑦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오류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 - 예로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정 의견이 표명되어야 할 오류인 경우 등
<p>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p>	
<p>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p> <p>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p> <p>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적용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Samil PwC

16

3. 제2장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유형자산	×××	×××	×××	×××	×××	×××
무형자산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비유동부채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	×××	×××	×××	×××	×××
순자산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 자산 총 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Samil PwC

17

3. 제2장 재무상태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p> <p>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p>②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분회계: 일반재무 보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목적사업: 정관상 목적사업 ✓ 기타사업: 공익목적사업 외 사업 ❖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소득 ✓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외 사업 <p>→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경우 → 법인세 신고시 별도 재무제표 작성 필요</p>
<p>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p> <p>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p> <p>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Samil PwC

18

3. 제2장 재무상태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p> <p>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p> <p>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p> <p>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p> <p>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p> <p>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p> <p>⑤ 자산과 부채는 유용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p> <p>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p> <p>제12조(유동자산)</p> <p>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p> <p>② 유동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p> <p>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p>	<p>❖ 순자산의 정의</p> <p>-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p> <p>❖ 영리법인과 비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영리법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공익법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자본금</td>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기본순자산</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자본잉여금</td>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f2f2f2;">보통순자산 • 적립금 • 잉여금</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이익잉여금</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자본조정</td>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순자산조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기타포괄손익누계액</td> <td></td> </tr> </tbody> </table> <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 조정 및 부채 인식 가능</p>	영리법인	공익법인	자본금	기본순자산	자본잉여금	보통순자산 • 적립금 •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순자산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영리법인	공익법인											
자본금	기본순자산											
자본잉여금	보통순자산 • 적립금 •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순자산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p>Samil PwC</p>	19											

3. 제2장 재무상태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13조(투자자산)</p> <p>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p> <p>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p>	<p>❖ 단기투자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p>
<p>제14조(유형자산)</p> <p>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p> <p>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p> <p>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p> <p>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p>	<p>❖ 감가상각 : 자산차감계정 사업비용 인식</p> <p>❖ 손상차손 : 자산차감계정 사업외비용 인식</p> <p>❖ 재평가 : 장부가액 수정</p>
<p>제15조(무형자산)</p> <p>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p> <p>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p>	<p>❖ 재평가 대상 아님</p>
<p>Samil PwC</p>	20

3. 제2장 재무상태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제17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8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한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Samil PwC

21

3. 제2장 재무상태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방법 - 결산조정 : 비용(부채)으로 인식 - 신고조정 : 외부회계감사 대상 ❖ 결산상 비용으로 인식 안한 경우 → 회계감사대상 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불가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②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주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구성 - 최초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 - 사업연도 중 기부받은 재산 - 보통순자산 중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하는 재산 등
제21조(보통순자산) ①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한다. ②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제22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Samil PwC

22

4. 제3장 운영성과표

□ 운영성과표 양식(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xxx	xxx	xxx	xxx
기부금수익	xxx	xxx	xxx	xxx
보조금수익	xxx	xxx	xxx	xxx
회비수익	xxx	xxx	xxx	xxx
투자자산수익	xxx	xxx	xxx	xxx
매출액	xxx	xxx	xxx	xxx
사업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이익(손실)	xxx	xxx	xxx	xxx
사업외수익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xxx	xxx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xxx	xxx	xxx	xxx
무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xxx	xxx	xxx
사업외비용	xxx	xxx	xxx	xxx
기타의 대손상각비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손상차손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재평가손실	xxx	xxx	xxx	xxx
무형자산손상차손	xxx	xxx	xxx	xxx
무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xxx	xxx	xxx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xxx
법인세비용	xxx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xxx

Samil PwC

23

4. 제3장 운영성과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①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성과
 2.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 ②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사업수익	마. 사업외비용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운영이익(손실)
나. 사업비용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다. 사업손익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크.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라. 사업외수익	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Samil PwC

24

4. 제3장 운영성과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25조(사업수익)</p> <p>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p> <p>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한다.</p>	<p>1. 사업수익</p> <p>❖ 경상적 발생</p> <p>- 이자, 배당수익, 처분손익도 사업수익으로 구분 가능</p> <p>2. 공익목적사업수익</p> <p>❖ 기부금수익</p> <p>- 인식 : 현금주의</p> <p>①영구적 제약 有 : 기본순자산</p> <p>②그 외 : 목적사업수익</p> <p>- 현물 : 기부받는 시점 공정가치</p> <p>❖ 회비수익</p> <p>- 인식 :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 발생주의 인식 가능</p> <p>❖ 보조금수익</p> <p>-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p>
<p>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p> <p>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p> <p>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p> <p>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p> <p>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p>	

Samil PwC

25

4. 제3장 운영성과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p>제27조(사업비용)</p> <p>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p> <p>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p>④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Samil PwC

26

4. 제3장 운영성과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⑥ 기타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성격별 구분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목적사업 1)	xxx	xxx	xxx	xxx	xxx
(목적사업 2)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기타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합계	-	xxx	xxx	xxx	xxx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에 관한 정보 주석 기재

- ❖ **분배비용**
 - 수혜자, 수혜집단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 장학금, 지원금
- ❖ **인력비용**
 - 고용 인력과 관련된 비용
- ❖ **시설비용**
 - 토지, 건축물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
- ❖ **모금비용**
 - 모금홍보, 모금행사, 기부자 리스트관리, 모금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비용

Samil PwC

27

4. 제3장 운영성과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제28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 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제2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 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 사업과 관련된 합리적 배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합리적 배분기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비용: 업무시간 등 - 시설비용: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 기타비용: 기타 합리적 배분기준

Samil PwC

28

4. 제3장 운영성과표,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p> <p>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p> <p>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운영성과표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공익목적사업</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기타사업</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수익</td> <td>사업수익</td> </tr> <tr> <td>사업비용</td> <td>사업비용</td> </tr> <tr> <td>사업외수익</td> <td>사업외수익</td> </tr> <tr> <td>사업외비용</td> <td>사업외비용</td> </tr> <tr> <td style="border: 2px dashed green;">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td> <td style="border: 2px dashed green;">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td> </tr> <tr> <td style="border: 2px dashed green;">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td> <td style="border: 2px dashed green;">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td> </tr> <tr> <td>당기운영손익</td> <td>당기운영손익</td> </tr> </tbody> </table> <p>❖ 다음 중 선택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 가감하여 산출 -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납부할 법인세 등</p>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당기운영손익	당기운영손익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당기운영손익	당기운영손익																
<p>제32조(법인세비용)</p> <p>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한다.</p>																	

Samil PwC

29

5.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p> <p>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p> <p>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취득 원가로 한다.</p> <p>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p>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p> <p>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 <p>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 자산의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 - 교환, 현물출자, 증여 등 무상 취득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 <p>❖ 자산의 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 급락 시 인식

Samil PwC

30

5.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p> <p>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p> <p>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p> <p>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 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p>	
<p>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p> <p>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Samil PwC

31

5.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p> <p>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p>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p> <p>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p> <p>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p> <p>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p>	<p>❖ 재평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를 허용하는 규정 - 일정주기에 따른 재평가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님 <p>❖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장부금액 증가액 순자산조정 인식</p> <p>❖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장부금액 감소액 사업외비용 인식</p>

Samil PwC

32

5.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p>	<p>❖ 유가증권 분류 -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p> <p>❖ 유가증권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평가</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처리</th> </tr> </thead> <tbody> <tr> <td>단기매매증권</td> <td>공정가치</td> <td>당기손익</td> </tr> <tr> <td>매도가능증권</td> <td>공정가치</td> <td>순자산조정</td> </tr> <tr> <td>만기보유증권</td> <td>상각후원가</td> <td>-</td> </tr> </tbody> </table> <p>❖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 평가</p>	구분	평가	처리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순자산조정	만기보유증권	상각후원가	-
구분		평가	처리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순자산조정											
만기보유증권	상각후원가	-											
<p>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p> <p>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p> <p>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p>													

Samil PwC

33

5.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p> <p>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p> <p>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p>	<p>❖ 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 사업과 관련된 합리적 배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p> <p>❖ 합리적 배분기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비용: 업무시간 등 - 시설비용: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 기타비용: 기타 합리적 배분기준
<p>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p> <p>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p>	

Samil PwC

34

6. 제5장 주식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40조(주식의 정의) '주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p>	<p>❖ 결산서류 등의 공시범위에 주식 포함 여부?</p>
<p>제41조(필수적 주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 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p>❖ 현물기부의 내용 공시 - 기부자 등 - 토지, 건물, 주식, 유형자산 등 - 기초잔액, 기중 변동, 기말잔액 표시</p> <p>❖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의 거래 공시 -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 거래 내역</p>

Samil PwC

35

6. 제5장 주식, 계속

개정안	의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p>❖ 기본순자산의 시가정보 공시 - 취득원가, 공정가치 비교 -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기재</p>																																																																																																																																											
<p>❖ 순자산변동내역 공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과 목</th> <th colspan="3">통합</th> <th colspan="3">공익목적사업부문</th> <th colspan="3">기타사업부문</th> </tr> <tr> <th>기본순자산</th> <th>보통순자산</th> <th>순자산</th> <th>기본순자산</th> <th>보통순자산</th> <th>순자산</th> <th>기본순자산</th> <th>보통순자산</th> <th>순자산</th> </tr> <tr> <th></th> <th>자산</th> <th>적립금</th> <th>잉여금</th> <th>자산</th> <th>적립금</th> <th>잉여금</th> <th>자산</th> <th>적립금</th> <th>잉여금</th> </tr> </thead> <tbody> <tr> <td>당기초</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r> <tr> <td>회계정책변경영향효과</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r> <tr> <td>전기오류수정 수정후 순자산</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r> <tr> <td>기본순자산증감</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r> <tr> <td>당기운영이익(손실)</td> <td></td> <td>xxx</td> <td></td> <td></td> <td>xxx</td> <td></td> <td></td> <td>xxx</td> <td></td> <td>xxx</td> </tr> <tr> <td>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td> <td></td> <td></td> <td>xxx</td> <td></td> <td></td> <td>xxx</td> <td></td> <td></td> <td>xxx</td> <td>xxx</td> </tr> <tr> <td>유형자산재평가이익</td> <td></td> <td></td> <td>xxx</td> <td></td> <td></td> <td>xxx</td> <td></td> <td></td> <td>xxx</td> <td>xxx</td> </tr> <tr> <td>적립금 전입</td> <td></td> <td>xxx</td> <td>(xxx)</td> <td></td> <td>xxx</td> <td>(xxx)</td> <td></td> <td>xxx</td> <td>(xxx)</td> <td></td> </tr> <tr> <td>.....</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r> <tr> <td>당기말</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d>xxx</td> </tr> </tbody> </table>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자산	적립금	잉여금	자산	적립금	잉여금	자산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회계정책변경영향효과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 수정후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기본순자산증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재평가이익			xxx			xxx			xxx	xxx	적립금 전입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자산	적립금	잉여금	자산	적립금	잉여금	자산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회계정책변경영향효과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 수정후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기본순자산증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재평가이익			xxx			xxx			xxx	xxx																																																																																																																																		
적립금 전입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Samil PwC

36

6. 제5장 주식, 계속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미
<p>제42조(선택적 주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제43조(주식기재방법) 주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Thank you

토론1



김재춘 대표(가치혼합경영연구소)



정책과 기구도 현장을 떠나서는 곤란하다

김 재 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소장

- 몇 년간 불거진 기부금 모집과 비영리법인 운영 투명성에 대한 불미스럽고 개탄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민간 영역에서의 기부금 모집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비영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디어, 기술, 사회인프라 환경에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기부 관련 프로세스(Planned giving 등)와 플랫폼(클라우드 펀딩 등)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른 적극적 수익사업의 권장 등 영리와 비영리 활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비영리의 법적 의미인 '비영리적 사업의 영위'와 '구성원들에 대한 배분 금지'은 종교와 사교 활동까지 비영리 영역에 포함시켜 '공익'이라는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
- 민간 단체들과 기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를 하여 왔고 법제도 개선에도 나섰지만 실질적 결과물이 적은 편임.

■ 발제1에 대한 토론

〈민간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및 과제〉의 발제를 통해 존경하는 김진우 교수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

기존의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통제와 규제 우선이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으로 나뉜 체계에서는 통일적 기준에 의한 관리가 힘들고, 부수적 업무 정도로 취급되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설립허가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 각기 다른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다 이로운 관리감독청을 선택하려는 부처 쇼핑 현상도 있다고 지적함.

그래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감독하며, 지원하는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육성·지원기구로서 ‘민간공익위원회’를 주창함.

- 토론자로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김교수님과 뜻을 같이하지만 그 해결의 방식으로 민간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름.
- 단순한 지원기구가 아닌 허가·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를 구성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①기존 제도의 보완, 수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가. ②그 기구의 운영이 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③옥상옥이 되어 도리어 현장의 단체들이 불편하지 않는가 일 것임.
- 산재해 있는 비영리 및 사회복지의 구시대적 문제는 기구의 문제가 아닌 제도 개선 의지의 문제로 보임. 그러기에 기구를 만들어 통합 대응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와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임.
- 비영리 법인과 단체는 그 고유목적 사업과 운용의 방식이 제각각임. 그러므로 설립을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결국 사업상 관계하여야 하는 관청은 역시 해당 분야의 부처나 지자체임. 자칫 공익위원회가 생똥맞은 프로세스로 존재할 수 있음.
- 주무관청 선정 문제는 실제 부처간 핑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정관상 주요 사업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무관청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역시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면 마무리될 수 있는 내용임. 주무관청 사이의 핑퐁은 서울특별시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주무부서 선정 프로세스 (민간협력과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 해당 부서들과 조율을 거쳐 주무부서를 확정 한 후 설립 절차를 밟게 하는 제도)’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임.
- 민간공익활동의 장려를 위해 사회 일반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하는 부분도 기존의 비영리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봄. 즉, 각 시도에 있는 엔피오지원센터나 복지협의회 등의 중간지원기관에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하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올 것임.

- 공익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하여 변호사나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의 자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실제적이지 못하며, 현재로도 상담과 질의 수준은 각 부처 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또한 어차피 큰 비용이 발생하는 수준의 자문이나 소송, 대행이면 공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봄. 또한 통합감독기구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음.
- 비영리는 워낙 다양한 계층과 관점, 이념,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역시 따져 봐야 함. 독재적 위정자들이 훨씬 '다루기 좋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함.
- 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발제문에서 밝힌 공익단체등록부 통합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비용 비율' 같은 구시대적인 규제 틀의 철폐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함.

■ 발제2에 대한 토론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과 대응〉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변영선님께서 2017년 12월 고시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의 세부내용을 소개하셨음.

- 몇 년 전 한 비영리 단체에서 국세청 공시 자료를 토대로 주요 모금 단체들을 비교 평가하였는데 단체의 특성과 활동을 표현하지 못하는 '운영비 비율'만으로 평가하여 현장 단체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음.
- 토론자로 저는 국가의 세금 징수 체계 면에서만 고민되고 있는 회계기준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봄. 우리가 진정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과연 회계적 숫자들이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임.
- 실제 회계 자료가 공시되더라도 그 것을 관심 가지고 보는 이들은 적고, 그 중 회계적 함의를 이해하는 자는 극소수이고, 이 중에서 숫자들 행간의 의미를 읽어 단체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이는 손에 꼽을 것임. 이는 회계자료가 기부자들을 위한 투명성 자료로 크게 소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현행 회계 기준은 지출 계정 과목별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사업 내용으로 재 분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교통여비가 연간 얼마 쓰였는지가 아니라, 교통여비 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고, 주요 의사

결정 관계자들이 그 것을 준수했으며, 실제 기준에 따라 횡령이나 누락없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교통 여비가 각 목적사업별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일 것임.

- 또한 비영리 법인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그 비용 지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함. 즉, 어떤 비영리 법인은 인력 지원 활동이 그 목적사업이라면 인건비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모금을 처음 시작하는 단체라면 소출보다는 비용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대 비교나 비율만을 가지고 단체를 평가하고 그 것을 공시하는 것은 작거나 새로 시작한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여전히 ‘영리기업들의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비영리 적용 모델’로 보임. 최종적으로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의 대상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조성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수준 확인에 초점을 맞춘 영리 회계가 사회문제의 해결과 비용의 운용에 초점을 맞춘 회계가 같다는 사실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음.
- 영리회계의 사회적, 공익적 활동 적용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단순한 수입지출 항목만으로 그 조직을 평가하는 방식을 넘어서 통합적인 사회적 지표 개발이 수십 년간 지속됨.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개발하여 조직들에게 적용하고 우수 조직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추진 중임. 일반 영리 회계에서도 회계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듯 비영리의 운용 합리성, 건전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지표들을 만들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투명성은 수입과 지출의 합당한 사용과 빠지지 않는 기입, 그리고 100% 공개에 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음. 다만, 이해관계자들 시각과 관점,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비영리라는 가치지향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길 바람.

-끝-

토론2



조근희 비서관(원혜영 국회의원실)



토론문

조근희

(원혜영 의원실 비서관)

Q. 투명해지면 신뢰가 생길 것인가?

Q. 신뢰가 형성되면 활성화 될 것인가?

□ 비영리 분야 종합관리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관리감독 / 활성화
- 두 시각 모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단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시민공익위원회 공약의 한계

□ 비영리 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 비영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통계의 어려움
- 전 근대적 행정, 비영리 종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

□ 정보 등록-공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이 핵심

- 비영리 종사자, (예비)후원자 및 시민, 관리감독권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
- 다양한 정보들의 종합 등록 및 공개
- 연구·조사 가능한 종합 데이터 공개
- 관리감독 및 결과 공개

□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문제

- 비영리 분야의 연합 필요
- 관리감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설계 필요

□ 공익법인의 회계기준, 목적과 목표를 크게 세워야 함

- 관리감독을 넘어 시민이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유용한 정보란?

□ 결론

- 비영리분야 전체의 공감대 우선 필요
- 큰 틀을 보고 양보할 줄 알아야 사회 변화, 큰 변혁 달성

토론3



배원기 교수(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제4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 토론문

배원기 교수
(홍익대 경영대학원)

먼저, 오늘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주제발표를 해 주신 두 분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로서, 오늘 발표내용에 대하여 좋은 내용에 대한 칭찬이나 동의가 아니라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 좋은 의견이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김 진우 교수님의 “민간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및 과제”에 관하여

현행 주무관청에서의 허가주의로부터 영국의 Charity Commission(자선위원회 또는 공익위원회)와 유사한 공익위원회 제도로 변경을 제안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 그 동안 우리나라의 NPO단체들이 꾸준히 요청하고 있었던 점,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때,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Charity Commission는 영미법계 나라인 호주,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웃 일본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김 교수님의 발제문중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민간공익위원회¹⁾의 ‘민간’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지는 점에서 ‘민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둘째, 민간공익 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예, 사무국 등)은 기존의 행정조직(공무원조직)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셋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앙의 공익위원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1)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위원회

넷째, 공익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실정상 종교단체는 공익위원회가 담당할 공익법인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외의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단체나 법인들도 공익위원회 관할 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등을 그대로 적용하게 할 것인지?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임의단체), 또는 시민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2. 변영선 이사님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과 대응”에 관하여

변영선 이사님의 발표는 2017년 12월에 고시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해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부연하여 설명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변 이사님이나 저도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초안 및 수정안 작업에 참여하였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편, NPO단체들이 요청하였던, 공익법인회계해설서 또는 FAQ는 공익법인회계기준 고시시점에서 제정되지 않고, 현재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진행되어 빠르면 7월 또는 8월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해설서 등이 나오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부 주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미비점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인데,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중에서,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법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복지법인, 학술, 장학재단, 예술 문화단체 및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²⁾들만 대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런 관계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나머지 유형의 공익법인에게 적용됩니다.

2) 개인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도 개설했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회계가 단식부기라는 점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강제적용대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³⁾.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스템상의 회계처리를 강조하고 있어서, 사회복지법인들은 보건복지부의 회계처리와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2개를 각각 적용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적용대상인지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회계기준도 조만간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공시양식이 학교법인, 의료법인, 기타 공익법인 등, 각각의 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되어 실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기타 공익법인별로 회계관습이 달랐으나, 1980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도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공익법인, NPO법인 회계기준이 각각 다르게 제정되어 있고, 그 통합은 아직 요원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비합리적인 관행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과감한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기타

두 분의 주제발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제도의 하나로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본재산제도'를 들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의 발표주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주요 항목인데, 회계학자로서 기본재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기본재산제도는 1975년 정부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시대에 너무 맞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생략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

3) 학교법인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단식부기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대학교의 재무제표만 회계감사를 통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은, 토론자가 알기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던 일본도 공익법인제도 개혁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재단법인만 최저순자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고, Uniform Prudent Management of Institutional Funds Act(UPMIFA)이란 법을 통하여, 사립학교, 병원을 포함한 NPO나 자선단체(Nonprofit and Charitable Organizations)들이 운영자금용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부재산(Endowment)의 투자운용 및 운용수입의 지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단체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최기관 소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표 나눔기관입니다.

- “미션” -----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 “비전” ----- 빈곤, 질병,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모금기관
- “핵심 가치” ----- 인간존중, 윤리성, 열정, 헌신, 도전정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Fundraising)】



【배분(Allocat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www.chest.or.kr (대표번호) 080-890-1212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가 혼자 그리는 그림은 꿈이지만,
어린이와 우리가 함께 그리는 그림은 미래가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문성

어린이재단은 아이들과 가족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생존지원, 보호지원, 발달지원, 권리옹호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성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재단만의 특화되고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 NGO 입니다.

투명성

어린이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과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투명한 살림을 책임지는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들이 믿고 선택하는 신뢰 받는 기관입니다.

역사성

1948년 CCF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70년간 세상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린이재단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해 온 뿌리 깊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국제성

세계 11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어린이재단 연맹(ChildFund Alliance)의 회원기관으로서 어린이재단은 세계 22 개국(2017 년 기준)의 아동을 위해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아동보호, 인도적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한결 같은 인류애를 실천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끌어가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둡니다. 또,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며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 »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 »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비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 행동 비전으로 "나눔의 생활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미션 **시민공익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트재단**

공익활동의 지속가능 모델 인큐베이팅

전통적 자선활동을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을 추구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비전을 함께 실현할 단체를 발굴합니다. 더 나아가 단체의 설립과 사업, 자립을 지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자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 · 지원자), 기업, 단체, 정부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나눔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110-035 전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트위터 @beautifulfund 페이스북 / beautifulfund

· memo ·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multipl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 memo ·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본 공동기획포럼의 자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 > 연구 > 연구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http://research.beautifulfund.org>) > 나눔지식 > 자료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http://www.childfund.or.kr>) > 아동복지연구소 > 자료실

제4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인	예종석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전화	02-6262-3000
홈페이지	www.chest.or.kr

